

의안번호	제407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0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도래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변경(안 제13조의2)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이 나”를 “사업이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이하“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본계획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으로, “수립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수립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또한 수립된”을 “수립된”으로, “변경할 때에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으로 한다.

제5조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8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특별회계의 설치)”를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입금과 그 밖에”를 “전입금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균형발전”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예비비”를 “그 밖의 예비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 불균형실태”를 “따른 불균형실태”로, “의한 평가결과”를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로 한다.

제1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을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를 “(충청북도균형발전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발전시책”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각각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2명

다. 제18조에 따른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
발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제1항 중 “권역별”을 “도지사는 권역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공공연구기관”으로,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을 “해당 권역 내의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과

정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으로,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연구센터”로,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도내 균형발전 촉 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충청북도의 균형발 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 인할 새로운 <u>사업이나</u>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 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업이나</u> ----- -----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u>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 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 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 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충청북도(이하 “도”</u>----- ----- ----- ----- -----.</p>

② (생략)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 수렴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

----- 수립된 -----
-----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

제5조(시행계획 수립) -----

----- 수립·시행-----
-----.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
----- 따라 -----

-----.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 연 1회 -----

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생략)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도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4. (생략)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예비비 등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제10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3. -----
-- 전입금 및 그 밖의 -----
--

4.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균형발전 -----

4. 그 밖의 예비비 -----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다른 불균형실태 -----
----- 다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
2월 31일-----.

제4장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
전시책 -----

-----.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건설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 당연직은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 업무담당 실국장

2.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충청북도정책자문
단 위원 2명, 지역발전연구센
터 2명, 그 밖에 도지사가 인
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의원 2명

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
문단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2명
다. 제18조에 따른 지역발전
연구센터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
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
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2. (생략)
- ②·③ (생략)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
별 연구팀 운영) ① 권역별 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지역발전연구
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는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과장으
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

- 위원을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
별 연구팀 운영) ① 도지사는 권
역별 -----

-----.

- ② ----- 공공연
구기관-----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 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 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권역 내의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 중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사람을 -----
-----.

③ -----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 위하여 -----

-----.

④ ----- 연구센터 -----

-----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 김선희